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75 발의연월일: 2023. 6. 2.

발 의 자: 김경만·정필모·이수진

김용민 · 김정호 · 김종민

강민정 · 김성환 · 유기홍

송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를 상회하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범죄임.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함.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운 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수입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하되, 추가 재원 충당을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 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 는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등 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 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 우

제13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30조제1항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음주운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제148조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외한다)은 5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 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 람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1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 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 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천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동
	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
	면허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
	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
	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
	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
	한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u>운전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7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 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 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 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 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

외하고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
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
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 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 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2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저 (생 략)

<u><신 설></u>

1 0 /위체기 기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방
지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
한 비용의 정부 또는 일부를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 제1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 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 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지원할 수 있으며, 제13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음주운전사고 예방 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하나에_ 해당하는-----5년</u>--

- 1.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 만을 운전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 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 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 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 6. (생 략)

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3 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 차등을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 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 람

2. ~ 6. (현행과 같음)